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1301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2. 12. 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B에게 울산지방법원 2022. 12. 6. 접수 제1259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“청구원인”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1)

판사 박정홍

별지

1)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.